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. 11. 18 선고 2021가단1063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18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21. 2. 2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21. 3. 9. 접수 제40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고권홍

별지